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영호 (통일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574호, 2024.12.20. 공포, 2025.6.2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내 입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활동, 관련국과의 교섭, 국내 입국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조치를 규정(안 제11조의2제1항)
- 나. 국내 입국 대상을 외국에 있는 보호대상자에서 보호신청자로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(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)
- 다. 외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두도록 함.(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 본문 중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제1항에서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) ① 법 제7조 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”이란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 접수 이후부터 국내 입국 완료시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

1.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
 2.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
 3. 국내 입국
 4. 기타 보호신청자의 보호 및 입국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
-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

협의하여 정하며,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.

④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·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.

⑤ 외교부장관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둔다.

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보호신청사실 통보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(이하 “보호신청”이라 한다)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(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, 이하 “재외공관장등”이라 한다)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1. 보호신청을 한 사람(이하 “보호신청자”라 한다)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 및 건강상태 2.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	제11조(보호신청사실 통보 등) ① (현행과 동일)
②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1조의2(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)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

	<u>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</u>이란 <u>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 접수 이후부터 국내 입국 완료시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.</u> 1. <u>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</u> 2. <u>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</u> 3. <u>국내 입국</u> 4. <u>기타 보호신청자의 보호 및 입국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</u>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세부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외교부령으로 정한다.</u>
<신 설>	③ <u>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,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</u>

	<u>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.</u>
<신 설>	④ <u>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·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 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⑤ <u>외교부장관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둔다.</u>
<신 설>	⑥ <u>제5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19조(국내 입국교섭 등) ① <u>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,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</u>	<삭 제>

<u>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 원장이 이를 정한다.</u>	
<u>②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이 송 시기·방법 등을 결정한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 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 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통일부 정착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23